

친애하는 뉴욕 주민 여러분,

직업을 찾고 성공하려면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고용주가 인종, 성별 또는 직무와 무관한 기타 특성 때문에 근로자 또는 지원자를 차별할 경우에 약화됩니다.

이것은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기도 합니다. 업무 수행에 따라 직장에서 판단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매우 기본이기 때문에 연방, 주 및 지방 차원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직장에서도 불만을 제기할 경우 어떤 보복이든 보호를 받습니다.

직업 차별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브로셔는 고용 차별을 규율하는 법률과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질문이 있거나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면 민권국(전화번호)으로 연락하거나 당국 웹사이트(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Letitia James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

자원

뉴욕주 법무장관실 민권국

28 Liberty Street
New York, NY 10005
civil.rights@ag.ny.gov
ag.ny.gov/civil-rights-complaint
(212) 416-8250 or (800) 771-7755
(800) 788-9898 - TTL

뉴욕주 법무장관부

33 Whitehall Street, 5th Floor
New York, NY 10004
eeoc.gov/field/newyork
(212) 336-3620 or (800) 669-4000
(800) 669-6820 - TTY

뉴욕주 인권국

One Fordham Plaza, 4th Floor
Bronx, New York 10458
지역 사무소: dhr.ny.gov
(718) 741-8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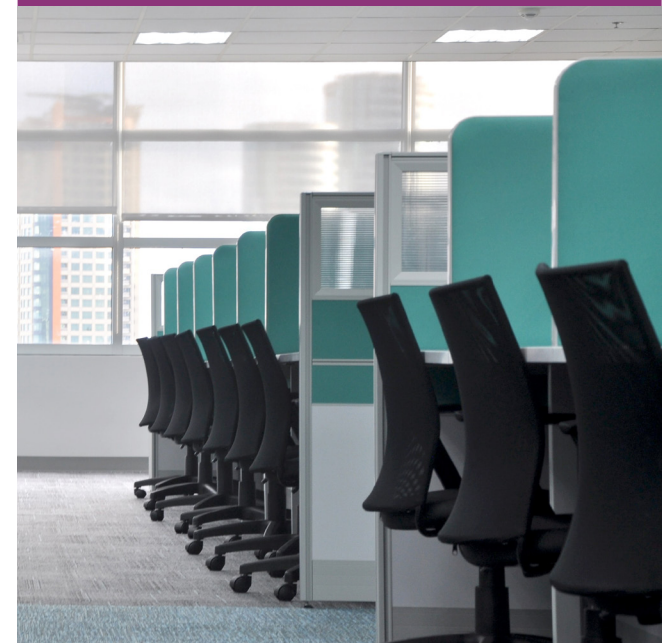
뉴욕시 인권 위원회

40 Rector Street, 10th Floor
New York, New York 10006
기타 사무소:
nyc.gov/site/cchr/about/contact-us.page
(212) 306-5070
(212) 306-7450 - 불만 제기

이 브로셔에 수록된 정보는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황에서 법적 조언을 제공하려는 용도로 제작되었거나 그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고용 차별

차별 없는 직장에 대한 귀하의 권리



뉴욕주 법무장관 사무소
레티샤 제임스



차별로부터 보호

연방, 주 및 일부 지역사회에서의 현지법은 인종, 출신 국가, 성별, 종교, 장애 및 기타 여러 범주에 따라 구직자 및 직원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고용을 거부하거나, 직원을 승진시키지 않거나, 해고하거나, 급여를 줄이거나, 직원이나 구직자가 보호 대상 범주에 속한다는 이유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보복으로부터 보호

차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직원을 대상으로 한 보복도 금지됩니다. 즉, 직원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경우 처벌을 받거나 해고 또는 직위 강등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법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연방, 주 및 지방 당국이 통과시킨 법률은 수 많은 동일한 문제를 다루지만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들을 이해하고 불만을 제기할 입장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법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당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지 인권법이 시행되고 있는지 시, 군 또는 카운티 당국에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 대상

일반적으로, 법은 인종, 출신 국가, 민족, 성별, 종교, 장애 및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합니다. 주법과 많은 현지법들은 성적 지향, 결혼 여부, 군대 상태, 유전적 원인, 전과 기록 및 유죄 판결을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뉴욕시는 가정 폭력, 스토킹 및 성범죄의 피해자로서의 신분도 포함시킵니다. 연방 법령은 일반적으로 직원 수가 15명 이상인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뉴욕주 및 뉴욕시 법령은 직원 수가 4명 이상인 고용주들에게 적용됩니다. 직업 소개소와 노동 조합도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불만 제기

고용 차별 또는 보복 피해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 고용주에게 불만 제기
- 미국 평등 고용 추진 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NYS 인권부(Division of Human Rights) 또는 NYC 인권 위원회(NYCCHR)와 같은 지역 위원회에 차별 혐의 제기
- 소송 제기
- 뉴욕주 법무장관실에 불만 제기.

선택마다 기한과 결과가 다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결과, 사건 발생 이후 경과된 기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 기관에 혐의를 제기해야 할지 여부와 같은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 차별이나 보복을 당했다고 생각되면 소송을 걸기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연방당국에 불만 제기

연방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개인은 가장 최근에 차별을 받은 후 300일 이내에 EEOC에 차별 혐의를 제기해야 합니다(연방 직원/구직 지원자는 45일 이내에 근무지/신청지 담당 EEO 책임자에게 연락해야 함). 혐의는 조사 과정을 거치게 되고 EEOC는 중재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중재에 실패하거나 EEOC가 차별/보복을 일으킨 타당한 원인을 찾지 못했을 경우, 해당 직원에게 90일 동안 연방 또는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고소권” 통지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법무장관

법무장관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차별 패턴 또는 정책을 주장하는 불만을 조사하고 사건을 기소합니다. 법무당국은 개인을 대변하지 않으며 뉴욕주 당국을 상대로 어떤 소송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단, 다른 지원자나 직원이 동일한 고용주에 의해 유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면 불만을 제기하여 당국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 및 지역당국에 불만 제기

개인은 1년 이내에 뉴욕주 인권국에 고용 차별 또는 보복 혐의를 제기하거나 가장 최근의 차별 행위가 발생한 후 3년 이내에 뉴욕주 법원에 직접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 한하여 NYCCHR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와 NYCCHR 모두 유사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각각은 혐의를 조사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리를 개최합니다.

또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직원과 고용주는 해당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관련자들의 서류 및 선서 증언을 포함한 증거자료를 각각 제출하게 됩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를 맺지 못하면 소송은 법원 또는 배심원에게 넘어갑니다.

차별이 발견되었을 경우의 일반적인 결과

고용주는 지원자/직원을 고용, 복직 또는 승진시켜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자 또는 직원은 금전적 손해 배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납 임금, 손실된 혜택의 가치, 고통과 불편함에 대한 보상적 손해, 징벌적 손해가 있습니다. 직원은 손실된 임금 및 혜택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와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자사의 인사 정책, 절차 및 교육도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무장관에게 불만을 제기한다고 해서 EEOC 제출 요건이나 기타 기관 또는 법원 기한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청구를 유지하려면 EEOC, 주정부 부서 또는 NYCCHR에 차별 혐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불만을 제기하려면 뉴욕주 법무장관실 민권국에 연락하거나 사용 가능한 불만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ag.ny.com/civil-rights-complaint.